

2014년도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현지진출 프로그램 캄보디아 [예비]창업팀 모집 공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캄보디아 현지보육 및 시제품제작 등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창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2일
중소기업청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우수한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보유한 (예비)창업팀을 발굴하여 캄보디아 현지에서 창업교육 및 코칭, 보육지원을 통한 글로벌 창업 촉진

□ 모집규모 : 5개 팀 내외

지원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원예정인원
현지진출 프로그램(캄보디아)	KOTRA 캄보디아 무역관	5개 팀 내외

□ 지원 금액 및 지원 항목

- 정부지원금 지원 : 최대 2천만원 한도
- 사업비지원 항목

창업자 지원금	시제품제작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기자재 구입비 등
	창업준비활동비	자문료, 시장조사비, 문헌구입비, 사무용품비, 숙박비(50% 이내) 등 창업활동비
	마케팅비	전시회 참가비, 홍보비, 홈페이지 제작비 등

* [붙임 1.] 현지진출 프로그램(캄보디아) 사업비 비목별 계상 기준

- 지원기간 : 선정 후 약 6개월
- 운영기관 지원프로그램
 - (예비)창업팀의 캄보디아 현지 진출을 위한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교육 및 멘토링, 창업보육(공간 및 인프라 등) 지원

구 분	주요내용	
창업교육*	전문가 특강, 캄보디아 문화, 캄보디아 창업 제도 및 절차, 기업가 정신, 세무 · 회계, BM 수립 전략, 유통구조 이해, 자재권 관리방안, 수출입 절차, 마케팅 방법론 등	
멘토링	내 · 외부 멘토를 통한 기술 · 경영 멘토링	8시간 이상
기타프로그램	현지 언어 교육, 창업 공간 및 회의실, 기자재 지원, 네트워킹 (현지 진출기업 방문 등) 지원 등	

* 선정자는 운영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교육 90% 이상 및 멘토링 100% 필수 이수

2 신청 및 선정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4년 6월 12일(목) ~ 6월 30일(월), 18:00까지
 - * 한국시간으로 18:00 마감이며, 캄보디아 시간으로 16:00 마감
 - (신청방법)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 온라인 신청 단계 >

① 창업넷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클릭 → ④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 ⑤ 기본정보 입력 → ⑥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 주의 20MB) → ⑦ 제출 → ⑧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예비]창업자 선정평가는 캄보디아에서 진행되며, 평가 참석을 위한 항공비용 및 체재비 등은 [예비]창업자 부담임

□ (신청자격) 캄보디아 현지 창업을 희망하는 ①예비창업자 또는 ②5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① (예비창업자)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개인 및 법인기업)이 되어 있지 않은 자(대한민국 또는 캄보디아 모두 해당)

* 팀으로 신청(2인 이내)할 경우, 팀 구성원 전원이 예비창업자이어야 함

② (창업기업 대표) 대한민국 또는 캄보디아에서 '09년 1월 1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기업의 대표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록증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보유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

□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를 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청 및 타 중앙정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글로벌 진출 사업」 등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 단, 공고일 현재 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신청 가능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 [붙임 2.] 현지진출 프로그램 지원제외 대상 업종

☞ 본 사업에 선정된 [예비]창업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고 해위 신청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즉시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예비)창업자 평가

- (평가방법) 발표평가를 통해 상위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5개 팀 내외 (예비)창업자 선정
- (평가항목) 창업을 위한 준비성,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및 기술성, 시장성 등을 평가

< (예비)창업자 평가 항목 >

평가항목	세부내용
창업을 위한 준비성	유사직종 재직경험, 지식재산권 확보, 창업관련 교육이수, 네트워크 보유, 창업자의 의지 및 역량 등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창업아이템의 독창성 및 차별성 창업아이템의 실현가능성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사업화 추진계획의 적정성 소요예산 수립계획의 적정성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경쟁사의 모방가능성(경쟁사의 모방에 대한 대처방안), 기술적 차별성(제품 성능의 우수성 등)
창업아이템의 사업성	캄보디아 시장 진출 가능성(예상 시장수요조사 결과), 창업 계획, 생산계획, 홍보 및 판매전략, 창업아이템의 경쟁력 및 파급효과 등

3. 추진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선정평가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진행되며, 평가 참석을 위한 이동 비용(항공비용) 및 체재비 등은 (예비)창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 이전까지 시제품제작을 완료하여야 하며, 창업교육 및 멘토링을 필수 이수하여야 함
 - 협약종료일까지 시제품제작의 미완료, 창업교육 및 멘토링의 미이수 시 지원된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 해외 현지 프로그램 선정이 취소되며, 선정 후 발견 시 선정취소와 더불어 기 지원된 정부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진출국가 비자 발급이 불가할 경우
 - 신청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 현지 진출 후 중간평가를 통해 현지시장 적합성 및 현지창업활동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 점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 시 지원 사업을 조기 종료함
- 해외현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해외진출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있음
 - 해외 현지법규를 준수할 것
 -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연락체계를 유지할 것
 - 질병 등에 대비 현지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 도난, 분실 등에 대해 주의를 다할 것

- 보육장소가 속한 도시를 벗어날 경우 사전 허가를 득할 것
 - (예비)창업자는 운영기관이 지정한 프로그램 이외에 발생한 현지 국가에서의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정부 및 운영기관에 일체의 책임을 요구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창업자에게 귀속됨

5.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 (중소기업청) (042) 481-8921
 - (KOTRA 캄보디아 무역관) (855) 23-999 098~9
 - Accelerator 운영팀, 070-7748-7996
 -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창업진흥원) 정보전략팀, (82)-042-480-4373

【붙임 1】

현지진출 프로그램[캄보디아] 사업비 비목별 계상 기준

비 목	계 삼 기 준
창업자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제품제작비(총 사업비의 5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주용역비) 창업자 본인이 시제품제작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외주용역계약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회사에 한함. 개인과의 외주용역계약 불가 - (재료비) 시제품제작에 투입되는 물품으로서, 부품 또는 가공품 등의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견품, 시약, 재료 구입비 등) - (기자재 구입비) 시제품제작을 위해 활용되는 자산성 물품 구입 등 (총 사업비의 10% 이내 계상) - (기자재 임차료) 시제품제작을 위해 활용되는 자산성 물품 임차에 소요되는 경비(실험장비의 임차비와 관련 부대비용) ○ 창업준비활동비(총 사업비의 2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준비활동비는 월 65만원 한도로 정액 지급 - 자문료, 시장조사비, 문현구입비, 사무용품비, 숙박비(50% 이내)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소요 비용 ○ 마케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파제의 마케팅활동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제품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 카탈로그 제작비, 영상 제작비,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 제작비

【붙임 2】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을 지원대상 업종으로 하되, 아래 업종은 지원대상 제외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계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계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산업플랜트 건설업(41225),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41224), 조경건설업(41226), 방음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제외)
도매 및 소매업	451	자동차 판매업
	452中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판매업 중 소매업
	45302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	소매업
운수업	491, 2	철도 운송업, 육상 여객 운송업
	50中	수상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1中	항공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291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52915	주차장 운영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숙박 및 음식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임대업	6911	자동차 임대업
	692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2	회사본부, 비금융 지주회사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제외)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중 콜센터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제외)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원훈련 학원(8565), 온라인 교육학원(85504) 중 기술 및 직원훈련교육은 제외)
보건업	86	보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9119) 제외)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기타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6911) 제외)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기소비 생산활동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참조